

 <b>CAREGEN</b>	<b>규 정</b>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1		

제정일자	2014년 01월 01일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구분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소속		-		-	대표이사
성명		-		-	정용지
서명/일자				-	
	/	/	/	-	/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2	<h2>윤리규정</h2>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 【전 문】

케어젠은 바이오메딕 펩타이드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리 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기에, 케어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가능한 기업이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케어젠은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 ① 본 윤리규정(이하 '규정')은 케어젠(이하 '회사')의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파트너사를 포함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본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규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③ 본 규정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4장 부패방지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모두 적용되며, 사업과 업무의 성격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 제1장 윤리경영

### 제2조 [임직원 윤리]

- 회사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회사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 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뇌물에는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

 <b>CAREGEN</b>	<b>규 정</b>  <b>윤리규정</b>	문서번호
		CG-A-004
3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한다).

4.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5.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패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되지 않는다.
6.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7.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8.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9.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0.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11. 회사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3조【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사 임직원은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품 또는 용역(입찰)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3.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4.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6.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조【고객가치 실현】

회사 임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1.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2.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4		

3.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6.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8.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제5조 [임직원 존중]

회사 임직원은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임직원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3.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4.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5.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6.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7.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 [사회 공헌]

- ① 사회공헌활동이란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이 사회에 갖는 책임 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 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등 회사의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회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회사 임직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5		

### 제7조 [지속가능성 추구]

회사 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UN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2.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3.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5.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6.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7.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8.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9.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제3장 인권헌장

### 제8조 [인권헌장의 목적]

회사는 인권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인권 헌장을 선언한다. 회사는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 제9조 [기본원칙]

- ①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6	<h2>윤리규정</h2>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③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⑤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의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⑦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 ⑧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제4장 부패방지

#### 제10조【목적】

회사는 본 규정의 부패 방지 준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각 업무의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준수를 통해 공정 거래와 자유 시장의 경제 질서를 준수한다.

#### 제11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직자"는 국내 또는 해외의 개인으로서 (a)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여하한 지위를 가진 자(선출직·임명직 모두 포함), (b)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확보한 회사(국영기업 및 국책기업)의 임직원, (c)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 (d)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 (e) 공적 국제기구 또는 공공 국제단체 (국가 또는 정부가 회원인 UN, 국제통화기구, 세계무역기구)의 임직원, (f) 정당의 임직원, (g) 공직 후보자, (h)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 (i)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진 기관, 회사, 기구 (경우에 따라 투자자와 은행 임원이 포함됨) 또는 재정지원 기구 (수출입은행, 보증보험공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공직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상기 정의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일컫는다.
2. "뇌물"이라 함은 제13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7		

3.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이용권, 입장권, 할인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여하한 권리 혹은 그것에 동등한 이익을 제공하는 권리 및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의미한다. 채무의 면제, 고용기회 제공, 권리 및 이익 제공, 교통 및 숙박편의시설과 식사, 음주, 골프의 제공 등을 포함한 유희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4. "금융상 이익"이라 함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약속어음, 어음, 차입 증명서, 상품권, 증권 등과 같이 현금화 가능한 여하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채무변제, 부채 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부동산의 무상 또는 염가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선물"이라 함은 상품, 회원권, 숙박 이용권, 입장권 또는 그것과 동등한 것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가가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상 이익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여가 문화활동, 스포츠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또는 무형의 이익 제공 행위를 의미한다.
7. "편의제공"이라 함은 교통시설, 숙박, 관광 및 가이드 제공, 스포츠시설 및 경기 관람 지원과 예약을 의미하는데 상기에 명시된 접대 또는 경제적 이익·금융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된다.
8. "경조 금품"이라 함은 경조 사유로 제공되는 유가물, 재산상 이익 및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9. "기부금"이라 함은 금전 지급, 대출, 현금 등가물, 선물, 서비스 등의 제공, 홍보지원 및 정치 캠페인 활동 등 여하한 혜택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10. "직책자"라 함은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기술경영자, 최고재무관리자를 포함한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을 의미한다.
11. "정치적 주요 인사" (Politically Exposed Person)라 함은 현재 또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12.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 제12조【국내외 관련법규 준수】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부패방지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과 뇌물수수 금지에 관련된 국제 계약 및 협약(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본원칙】

회사의 임직원이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i) 공직자 또는 정치적 주요 인사에게 유·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8		

이익 포함)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ii) 타인에 대하여 유·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 이익 포함)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뇌물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1. 회사가 특정사업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2.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공직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
3.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
4. 부적절한 활동 또는 역할의 수행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5. 회사 임직원 자신의 이익 또는 가족, 친구, 동료 및 지인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 제14조【고용 및 제3자 계약의 기본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여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또는 컨설턴트, 중개인, 에이전트와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계약 체결 후 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세부지침】

제17조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임직원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공직자 또는 회사의 고객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1. 금융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조 금품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1) 현지 문화와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면서 현지 공직자 윤리강령 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 2) 경조 금품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증빙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류되어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2. 선물, 접대 및 편의 제공은 반드시 회사의 제품·서비스의 판촉 또는 유대관계의 강화 등의 목적으로만 현지 부패방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선물 및 접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히 금지된다.
  - 1) 부적절한 집무 집행을 유도할 목적인 경우
  - 2) 이해충돌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3) 공개될 경우 난처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인 경우
  - 4) 가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9		

- 5) 사업에 관련된 자 외에 그의 가족 구성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 6) 상대방이 조직의 내부 규정 및 현지법 상 그러한 선물 및/또는 접대를 받는 것이 위법인 경우
3. 임직원은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 규정의 자가진단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4. 기부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1) 정치적 목적의 재정적 기부금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선거의 후보자, 선출된 공직자 또는 정당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2) 기부금은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기부금이 여하한 공무원의 여하한 약속된 대우 또는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 3) 현지 법령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 및 기부금의 최대 허용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 가액이 현지의 관행과 문화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5) 특정 공직자 또는 고객사의 임직원에게 빈번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6) 기부금의 내역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 반영되어야 한다.
  - 7) 부패방지법령에 따른 합리적이고 선의에 기한 기부금의 제공은 허용된다.

### 제16조【관계인 준수 및 계약】

- ① 회사는 관계인 또는 제3자가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이러한 제3자 또는 관계인이 부패방지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관계인 (또는 제3자)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회사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패방지법령 및 부정 청탁 협약을 준수할 의무
  2.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사, 회계감사인 및 수사기관의 수사 및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를 정확히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
- ③ 회사의 임직원은 관계인 (또는 제3자)이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부패방지 협약 조항을 준수하고, 관련 결과를 보존할 것을 확약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④ 관계인 (또는 제3자)가 본 조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도 부패방지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인 비용의 지급】

- ① 관계인(또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또는 대금)들은 해당 관계인(또는 해당 제3자)이 실제로 제공한 합법적인 용역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어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의 경우, 회사 담당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서면으로 증빙되는 소액의 경비의 지급은 제외)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10		

2. 회사의 수표로서 "현금", "소지인" 또는 해당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 관계인(또는 제3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기재된 수표로 지급되는 경우
3. 관계인 및 제3자 외의 타인(법인·자연인 포함)에게 지급하는 경우
4. 관계인의 소재지 외 다른 국가/개인/계좌에 지급하는 경우
5. 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대금이 뇌물 및 다른 유인책으로 악용될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② 아래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담당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해당 관계인에게 지급될 계약의 총액 또는 일회적으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2. 실제 관계인이 수행한 용역 또는 업무의 수준/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청구된 비용이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
3. 해당 관계인에 지급되는 비용의 최종 목적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 제18조【장부 및 기록】

- ① 회사와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를 신속, 정확,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② 회사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지급한 모든 지출 내역을 회사 내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모든 지급 및 지출 내역이 경제적 이익, 금융상 이익, 선물, 접대, 편의제공 또는 기부금 임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제5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9조【위반행위 신고】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위반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회사의 임직원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이 발생한 경우
  2. 직무 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한 경우
  4.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11		

해할 경우

5.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 공개하는 경우
6.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타사·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고객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
8.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9.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 내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이 발생한 경우
10.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 공사 및 다른 사업의 수주 등을 앞두고 여하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12. 여하한 성사 사례금 또는 성공 보수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13. 통상적이지 않고, 서면 증빙이 미약하거나, 또는 급박하게 집행된 비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경우
14. 대금의 현금지급, 계좌의 소유자 정보 없이 계좌 정보가 숫자로만 구성된 계좌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경우
15. (계약당사자의 주소지와 다른) 타국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
16. 관계인이 공직자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특히 해당 가족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17. 관계인이 현지의 법과 규제에 무지하거나, 이를 명백히 무시하는 경우

## 제20조【경영 시스템】

- ① 회사는 윤리 경영, 인권 경영, 반부패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
  2. 윤리 경영, 인권 경영, 반부패 경영 실행계획 수립
  3. 윤리적 리스크, 인권 침해 리스크, 부패 리스크의 상시 모니터링
  4.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 및 운영
  5.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실시, 결과 보고 및 공표
  6.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운영
  7. 윤리 경영, 인권 경영, 반부패 경영 관련 내부 교육 및 보고
- ② 회사는 윤리·인권·부패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임직원 및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는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과 함께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 ③ 회사는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 및 재발방지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④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 및 그 처리 방안을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b>CAREGEN</b>	<b>규 정</b>  <b>윤리규정</b>	문서번호
		CG-A-004
12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제21조【교육, 상담 및 확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내부 교육을 진행한다. 내부 교육을 통해 반윤리, 반인권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내부 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교육은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 ③ 회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등 관계법령 및 본 규정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본 규정의 내용 및 실행,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다.

#### 제22조【조사 및 모니터링】

- ① 담당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감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는 정기·비정기적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등 관계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에 관련한 회사의 조사를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은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과 도움(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면책 및 벌금 보전 포함)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b>CAREGEN</b>	<b>규 정</b>  <b>윤리규정</b>	문서번호
		CG-A-004
13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 제2조【참고문헌】

본 규정은 국제 인권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고,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 UN General Assembly (1948)
2.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1998)
4.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2019)
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General Assembly (2013)
6. Paris Agreement, UNFCCC (2015)
7.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2011)
8.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Drive Sustainability (2017)
9.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C (2011)
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2010)
11.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12. CDP (<https://www.cdp.net/en>)

 <b>CAREGEN</b>	<b>규 정</b>  <b>윤리규정</b>	문서번호
		CG-A-004
14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별지서식 제1호】 임직원 윤리규정 준수(실천) 서약서**

**(주)케어젠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도모하며, 임직원의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업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케어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규정과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회사와 케어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첫째, 우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 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거래처나 고객사와의 금품수수나 향응 접대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사의 목표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어떠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다른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한다.

넷째,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 케어젠인으로서 내린 제반 결정이나 행동이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섯째, 우리는 업무상 득한 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일곱째,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b>CAREGEN</b>	<b>규 정</b>  <b>윤리규정</b>	문서번호
		CG-A-004
15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별지서식 제2호】 임직원 자가 진단표 (Anti-Corruption Self-diagnosis)**

임직원은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기 전에 다음의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본 선물 또는 접대가 사업적 거래의 “보상”적 측면이 있는가?		
2. 본인이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가 ①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것인지? 또는 ②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여하한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3. 해당 선물 또는 접대의 가치가 과도한 수준인가?		
4. 선물 또는 접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로 특정인물에게 제공되거나 특정인물에 의해서 수령 되지는 않았는가?		
5. 선물 또는 접대를 수령하는 것이 해당 수령자가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규칙 혹은 회사의 내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가?		

\* 상기의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에 해당되면 임직원은 그러한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b>CAREGEN</b>	<b>규 정</b>	문서번호
		CG-A-004
16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별지서식 제3호】 외부업체용 윤리경영 준수 협약서**

## 윤리경영 준수 협약서

당사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투명한 기업경영』 이 건전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주)케어젠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계약 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귀사의 직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약속하지 않겠으며, 귀사의 직원 및 관계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약속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 취소, 계약취소 및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귀사의 직원 및 관계인이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요구를 거부하고 귀사 인사팀에 즉시 제보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귀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서명)



 <b>CAREGEN</b>	<h1>규 정</h1>	문서번호
		CG-A-004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년 07월 22일
17		

**【부록】 윤리경영, 인권 경영, 반부패 경영 담당**

구분	담당
윤리 경영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인사총무팀장
인권 경영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인사총무팀장
반부패 경영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감사실장
내·외부 신고 창구	인사총무팀장, 감사실장

**【조직도】**

